별장공파 제23차 정기총회

파조 설단 및 파종회관 건립 토의

▲ 별장공파종회의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 신임 권봉도 회장이 취임수락인사를 하고 있다.

안동권씨 별장공파別將公派의 제23차 정기총회가 2009년 5월 9일 토요일 11시 안동시 옥정동 소재 ‘ 안동회관 ’ 2층에서 열렸다. 80여명 회원이 원근에서 참석하였다. 권승환權昇煥 간사장의 사회진행으로 국민의례와 시조묘소에 대한 망배 및 상읍례를 하였다.

권영환權瑩煥 회장이 개회인사말을 하고 안동화수회장 권재주權在周씨가 축사를 하였다. 국회의원 권택기權宅基씨는 축전으로 대신하였다. 이어 경과보고와 감사 보고, 결산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전임원의 임기만료로 임원개선을 하여 서울의 현대통상주식회사 대표 권봉도權鳳道씨를 새 파종회장으로 선출하였다. 그 이하 선출 또는 유임된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회장 : 권봉도權鳳道

부회장 : 권순욱(안동)、권기원(안동 장춘보석)、권순협權純協(안동농협장)、권재두(안동 남선)、권정의(안동)、권일웅(서울)、권효기(대구) 이상 유임, 권기수(안동)、권기욱(영주)、권경읍(부산)、권용일(서울)、권용진(서울) 이상 신임

감사 : 권재익(안동)、권무성(안동)

간사장 : 권승환權昇煥(부회장 겸임)

임원 개선을 마치고는 신임 회장으로 만장일치 선출된 권봉도씨의 취임수락 인사말을 들었으며 신임 임원들도 나와 수락 인사를 하였다. 다음에 향후 파종회의 발전에 관한 토의를 하였다. 여기에서 파조 별장공의 제단을 봉설하는 문제가 토의되고 안동시내에 파종회의 회관을 마련하는 계획 및 회칙을 개정하는 안건이 가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안하기 위한 논의는 신임 회장단이 상견례를 겸하여 6월 13일 토요일에 다시 모임을 가지고 하기로 하였다.

<權昇煥>

고양시 창수공종회 비상대책위원회의

權泰奉 전회장의 공개서한등 파문

경기 고양시 동일산구 성석동 감내에 있는 안동권씨 추밀공파 시조후 19세 광흥창수廣興倉守 휘 억憶의 창수공종회가 2009년 4월 25일의 임시총회에 이어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의를 열었다. 동회의는 5월 2일 11시에 감내 재사에서 열렸고 12인 비상대책위원과 4월 25일 임시총회에서 선출한 3인의 공동대표가 참석하였다.

본지는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창수공종중의 금융사고와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문중일반에 비상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심층취재 보도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회의에 필자가 취재를 나갔다. 그러나 수인의 비대위원이 취재를 거부하며 기자에게 폭언과 위협을 가하여 분위기가 살벌하였다. 취재용 캠코더를 빼앗고 가격하겠다는 등의 언사가 여과없이 나도는 등으로 목하 창수공종중의 과격상태가 드러나는 정경이었다. 비공개회의이면 비공개회의인대로 기자가 알아서 취재를 하되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기자는 돌아서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3일에 있었던 동비대위의 토의 및 결의 사항과 4월 25일에 있은 임시총회의 상정안건 처리 사항 등에 대한 확인과 향후 대책이 주의제였다. 4월 3일 비대위 회의의 회의록과 결의사항 등이 그 존재 여부가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면서 당일 회의록에 위원들이 서명을 한 원본이 어디에 있느냐는 등의 추궁이 나왔으나 총무가 그러한 의결 사실이 없다고 발표하고, 위원들은 다수가 또한 이를 따라 특정의 결의가 없었던 일로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 이날의 비대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지침을 명확히 결의하였다.

창수공종회장의 직인은 3인 공동대표가 합의 찬성해야 날인할 수 있다.

모든 안건은 비대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을 성원으로 하고 참석위원의 전원 찬성으로만 처리할 수 있다.

한편 3인의 공동대표 중 최연장자 권병홍權炳洪씨가 수석대표가 되어 직인을 관리하고 은행 통장도 그 명의로 변경 개설키로 하였다. 그밖에 종중의 현재 재산 조사와 업무내용 파악은 대표 3인과 감사 2인 및 총무가 합동하여 하기로 하였다.

5월 2일의 이 회의가 있고부터 16일이 지난 5월 18일 본사에는 창수공종회의 전회장 권태봉權泰奉씨가 보내온 내용증명의 공개서선이 우편으로 배달되었다. ‘ 안동권씨창수공종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보내는 내용증명 및 공개서한 ’이라는 제목으로 수신자가 안동권씨종보사로 되어 있어, 사실상 본지에의 보도를 전제로 발송한 동 서신의 내용은 저간의 창수공종회의 정황과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적시, 서술하고 있었다. 사안이 매우 심각하여 이를 전문 게재하고 독자가 현재 권씨문중의 한 소종중에 해당하는 창수공종회가 처한 상황이 어느정도 위태로운 것인가, 그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안동권씨의 타문중 모두에 타산지석 이상의 거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인 權泰奉은 2007년 4월 29일부터 2009년 3월 28일까지 경기 고양시 동일산구 성석동 1175번지 소재 安東權氏倉守公宗中의 회장으로 재직한 자로서 작금에 안동권씨창수공종중에 발생하고 있는 사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감회와 입장 및 견해를 술회하고 이를 우체국에서 내용을 증명하는 공개서한으로서 성명합니다.

본인이 종회장으로 취임하여 업무를 파악하고 경악한 것은 본종중의 선영토지가 그 임차인의 ‘ 식민지 ’와 다름없이 되어 있고 임차인 ‘ 중산힐스 ’는 우리 종중재산과 종원 위에 ‘ 총독부 ’처럼 군림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이같은 위력의 중산힐스와 그 사주를 받는 세력에 맞서 2년 동안 갖은 인격적 모욕과 협박을 감수하며 조상의 유산을 사수하고자 버티어 왔으며, 이는 스스로 평가하고 자임하여 후대에 부끄러움이 없고 지하에 가서도 선조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기중 본인의 임명직인 종회 사무장이 범한 대형 금융사고로 직무상 및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여 2009년 3월 28일의 고양시 동일산구 성석동 감내 재사에서 있은 안동권씨창수공종회 2009년도 정기총회에서 본인이 임명했던 사무장을 파면하고 본인도 회장직을 사퇴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회장직을 중도사퇴하는 것으로 면책이 되고 득죄가 풀린다고 생각지 않으며 이 허물은 본인의 자손에게까지 미치리라는 것도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놀라 마지 않는 것은 이번에 본인이 회장직을 사퇴하는 것을 기화로 특정세력이 불법과 탈법 및 밀실야합 등을 통하여 종중을 더 큰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의 소견으로 분석판단컨대 이번에 사무장이 범한 5억원 정도의 금융사고는 앞으로 닥쳐올 종중의 불이익과 잠재성 재정손실에 비하면 그리 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득죄한 몸으로 다시한번 빗발치는 화살을 한몸에 받을 것을 각오하고 이를 저지하는 데 있어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첫째, 2009. 3. 28.자 안동권씨창수공종회 정기총회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문제

2009년 3월 28일 11시에 고양시 성석동 감내재사에서 열린 안동권씨창수공종회의 2009년도 정기총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열렸으므로 법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본인의 견해입니다. 회칙상 총회의 정족수가 60인인데 참석자가 53인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총회 소집권자이자 회장인 본인에게 전화 등으로 불참 사유를 대고 위임한 회원이 10인을 상회합니다. 또한 성원보고를 할 때에 정족수가 약간 미달이나 회칙 조항에 명문화되고 예고된 정기총회인만큼 정족수에 다소 못미치는 것과 관계없이, 사태가 워낙 긴급한만큼 회의를 열자고 해서 개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총회를 몸소 진행한 총무가 며칠이 지난 뒤에야 이날 정기총회의 부존재를 조작하여 이미 해임되어 존재치 않는 유령 부회장 한 사람을 소집권자로하여 4월 25일자의 임시총회를 소집, 집행하였으니 이는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실정법적으로 3월 28일의 정기총회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고 봅니다. 3. 28. 정기총회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소집권 무자격자가 소집하여 집행한 4월 25일의 창수공종회 임시총회는 존재치 않습니다. 3월 28일의 정기총회가 부존재로 확인된다면 그날의 정기총회가 적법한 것으로 알고 도의적 책임으로 회장직 사의를 표하고 사퇴를 그 정기총회에서 수리받은 본인의 행위는 원인무효가 되므로 본인은 3월 28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회장직에 복귀할 것입니다.

둘째, 본인의 회장직 사퇴 수리 및 임시총회 소집권자의 문제

본인이 3. 28. 정기총회에서 회장직을 사퇴하고 임시의장에게 의장직을 이양했던 것이 정기총회 부존재로 원인무효화되었더라도 본인이 총회와 관계없이 문서로 사퇴서를 종회에 제출했더라면, 종회에서 이를 수리하고 부회장 연장자를 회장대행으로 하여 임시총회 소집권자로 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4월 25일 이전은 물론 현재까지도 어떤 형태의 문서로된 회장직 사퇴서를 종회에 제출한 바 없고 더구나 부회장 중 연장자인 권○○에게 회장